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5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윤정노, 임채웅, 이창현, 김은미, 부광득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조창권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1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15. 선고 2018가합116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남 무안군 C 대 30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7. 12. 15. 접수 제2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55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5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기초사실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 사실’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 역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관련 민사소송 등의 경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I은 2018. 1. 12. 원고, E, F, G, H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018). 제1심법원은 2020. 8. 31.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I이 2020. 9. 11. 불복하여 항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브2140). 하지만 항고심법원은 2021. 11. 10. I의 항고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2021. 11. 26. 확정되었다. 2) I은 2018. 9. 21. 원고, E, F, G, H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445). 3) E, G은 2019. 9. 9.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086.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1. 4. 8. E,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 G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654), 항소심법원 역시 2021. 10. 28. E,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내지 65호증”과 “의 각 기재 및 영상” 사이에『을 제86, 87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출연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F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I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추후 상속재산을 E, G, H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원고는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출연을 하였다. 즉 원고는 F의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출연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출연을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금융자산 55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출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예비적 주장)

88억 원에 이르는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2016. 10. 24.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0. 24.부터 위 금융자산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F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까지 피고에게 출연한 것은, 명의수탁자(원고)가 명의신탁자(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제3자(F)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주장이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함께, 갑 제51, 54, 55호증을 비롯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서증들 및 을 제66, 68, 69, 86, 8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P의 증언,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 피고 대표자 L에 대한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출연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제1주장은 결국,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상장주식 등 합계 약 88억 원의 금융자산(이하 '계쟁 자산'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보유하던 자산(이에 따라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원고에 대한 문답서(갑 제19호증), 망인이 생전 자신 등의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P의 제1심 증언이나 진술서(갑 제51호증), 각 차명재산 관리 자료(갑 제54, 55호증) 등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듯한 증거라고 보인다. 하지만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을 제86호증)에서 보듯이, 2008년경부터 망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게 된 P는 2001년경 이전부터 증식되어 온 금융재산의 소유 명의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인다. 망인이 직접 또는 P를 통해 계쟁 자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지만, 그 자산은 비교적 단순하게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자녀들 사이의 분쟁 심화를 막기 위해, 세무서 조사 당시 계쟁 자산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제출 증거들에는 충분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힘들다.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그리고 관련 소송의 수소법원에서도 계쟁 자산이 망인의 재산(차명재산)이라는 E 등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나. 원고는 F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사정들로, ① F의 기망이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쟁 자산 대부분을 출연할 이유가 없다(갑 제21, 46호증), ② F가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사였다면, F가 피고의 설립 그리고 계쟁 자산의 존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갑 제26, 27호증), ③ 원고가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자발적으로 피고를 설립했다면, L을 대표자 이사로 추대할 리 없고, 현재까지 피고를 L에게 맡길 리가 없다(제1심 증인 F의 증언), ④ P는 F로부터 직접 F가 원고를 기망한 내용을 들었다(제1심 증인 P의 증언, 갑

제19호증)는 등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①, ②와 같은 주장 내지 증거들은 원고 내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E, G 등의 입장에서 F의 기망을 의심해 볼 만한 정도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F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 또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위 ③의 경우 L이 의료재단 운영에 관한 경험 내지 능력이 없다는 취지인 제1심 증인 F의 증언 또는 L이 F와 이혼했음에도 여전히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L이 이 사건 출연 경위에 관한 원고와 F 사이의 논의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근거로 삼아 F의 기망을 곧바로 추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L은 이 법원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가 피고의 창립총회일에 L에게 ‘피고를 설립하는 것은 망인의 유지’라고 말했다든가, 창립총회 전에는 L이 피고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기도 하다.

위 ④의 경우 F가 2017년 말 P에게, 상속세 및 혼외자(I) 문제로 F가 설립하는 의료법인(피고)에 상속재산을 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F가 원고에게 말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의 핵심 내용(추후 상속재산을 E 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 나아가 F와 E, G, H 사이에 2018. 1. 11. F가 28억 원을 E, G,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다만 I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어서, F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그 밖에도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 R 목포영업소 직원이었던 S과 망인 사이의 녹취록(갑 제49, 59호증), F가 직접 또는 P를 통해 상속세 신고 이전에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조사한 내역(갑 제44호증)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의 설립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넘어, F가 상속세 절감 등을 내세운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출연을 하게 했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라. 그리고 ㉠ 원고가 학교법인 J의 이사장과 학교법인 N 및 재단법인 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여해 온 점, ㉡ 원고가 피고의 요양병원 신축 부지를 물색하였고, 신축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의 지인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㉔ 이 사건 출연 이후, 다른 자녀인 E, G, H이 이 사건 출연을 문제 삼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출연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제2주장 역시, 계쟁 자산 내지는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3항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금융자산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제3자’인 F는 ‘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의 법리를 곧바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김승주, 판사 이수영

- 1) E, G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다291927).
- 2) 아래 가, 나.항 기재 주장은 각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관해 원고는 서로 선택적 청구의 관계임을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주장이든, 결국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한 개의 청구에 대한 법적 권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는 복수의 공격방법일 뿐, 소송물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판단하기로 한다.